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(서삼석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626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1. 11.

발 의 자 : 서삼석 · 어기구 · 이개호
허종식 · 소병훈 · 서동용
김승남 · 이상현 · 임호선
주철현 · 장경태 · 조오섭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도서·벽지 교육진흥법」은 도서·벽지 지역의 학교에 대하여 학교 부지 및 시설의 확보, 교재·교구의 정비 등의 지원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, 현행법은 도서·벽지 지역의 어린이집에 대한 별도의 지원내역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.

그러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제도를 마련할 의무가 있으며, 인구 감소 및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대책이 필요함.

이에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보육교직원에게는 추가 수당을 지급함으로써, 도시와의 보육격차를 해소하려는 것임(안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신설).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4항(중전의 제2항) 중 “제1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한다.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영유아의 원활한 보육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1. 어린이집용지와 그 밖에 보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
2. 교재·교구 및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료의 정비
3.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
4. 영유아의 외부 체험학습 기회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지원
 - 가. 교통비 및 숙박비
 - 나. 기타 필요한 비용
5. 보육교직원 및 외부강사의 확보

6. 보육교직원에 대한 주거 지원

7.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

8. 보육교직원에 대한 연수기회 부여와 연수경비 지원

② 국가는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도서·벽지·농어촌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2조(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) <신 설>	제52조(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의 어린이집) ① 국가와 지 방자치단체는 <u>도서·벽지·농 어촌지역 등에 거주하는 영유 아의 원활한 보육을 위하여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서·벽지 ·농어촌지역 등에 있는 어린 이집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u> 1. <u>어린이집용지와 그 밖에 보 육에 필요한 시설의 확보</u> 2. <u>교재·교구 및 도서·벽지· 농어촌지역 등의 특수 사정에 적합한 학습지도에 필요한 자 료의 정비</u> 3. <u>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필 요한 조치</u> 4. <u>영유아의 외부 체험학습 기 회 확대를 위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지원</u> 가. <u>교통비 및 숙박비</u> 나. <u>기타 필요한 비용</u> 5. <u>보육교직원 및 외부강사의</u>

<u><신 설></u> ① (생 략) ② 제1항에 따른 도서·벽지·농어촌지역 등의 구체적인 범위,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및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	<u>확보</u> 6. <u>보육교직원에 대한 주거 지원</u> 7. <u>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</u> 8. <u>보육교직원에 대한 연수기회 부여와 연수경비 지원</u> ② <u>국가는 도서·벽지·농어촌 지역 등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별로 도서·벽지·농어촌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.</u> ③ (현행 제1항과 같음) ④ <u>제3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---	--